

투자권유준칙

제정 2019. 11. 19.

개정 2021. 08. 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 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②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 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 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제 3 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1.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 2.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

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단,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 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 등 회사와의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제 4 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1 절 투자자정보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1-1호] 또는 [별지2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1-1호]과 [별지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 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절차에 따른다.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연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제 2 절 투자권유

제10조(투자권유 절차)

- ① 임직원 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1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와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투자일임계약·투자자문계약 체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 ① 임직원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0조제1항에 따른 [별표1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5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 ①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법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 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②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2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가)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3) 신탁계약
 - (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나)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 (1)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2)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8.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11. 금소법 제17조를 적용 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12. 관계법령 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 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13조의2(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 ①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투자권유불원 등)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절 설명의무

제14조(설명 의무)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자 :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임직원 등 :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1.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

되는 계약

- ④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⑤ 임직원 등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임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1.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⑦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⑧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한다.
- ⑩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는 7영업일 이내에 계약절차가 관계법규 및 이 준칙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투자자로부터 전화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 받고 [별지4호]를 작성하여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단, 투자자 본인이 계약 시에 전화나 문자 등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회사의 인력현황, 계약건수,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자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제 5 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5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①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3호]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1.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 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임직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 6 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6조(계약서류의 교부)

- ①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16조의2(청약의 철회)

- 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별지6호](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제16조의2내지 제16조의3에서 '서면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계약 체결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6조의2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④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서에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⑤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⑥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6조의3(위법 계약의 해지)

-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별지7호]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계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별지8호]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나.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 5.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

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8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 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9.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0.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2.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3.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19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0조(투자일임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① 임직원 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1-1호] 또는 [별지2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의 경우 전문금융소비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금융소비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임직원 등은 제1호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1:1로만 운영하는 경우 (특정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 재산의 일정 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지 않는 경우)는 자산배분유형군이나 세부자산배분유형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에도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하게 운용해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자산배분유형군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 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2.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3.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 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4.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위험에 관한 사항

제21조(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한 특칙)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자가 정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또는 운용지침에 따라 투자자유형을 분류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회사가 투자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분류한다.

제22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 ①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8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투자자정보 확인 (일반투자자, 법인)

투자예정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4년 미만 ☐ 4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
투자경험	☐ 1년~2년 미만 ☐ 2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 ☐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 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전환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등 ☐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 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 복수의 금융투자상품의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위험등급의 금융투자상품 체크
투자지식	☐ 매우낮음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 낮은수준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 높은수준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 매우높음 :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재산상황	(개인) 연소득 현황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5천만원 미만 ☐ 5천만원~7천만원 미만 ☐ 7천만원~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개인) 총 자산규모(순자산) ☐ 5억 미만 ☐ 10억 미만 ☐ 20억 이하 ☐ 30억 이하 ☐ 30억 초과
	(개인) 총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 10% 이하 ☐ 2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40% 초과 (법인) 자기자본(자산-부채) 규모 ☐ 10억이하 ☐ 10억~50억 이하 ☐ 50억~100억 이하 ☐ 100억~200억 이하 ☐ 200억 초과
	향후 자신의 경제상황(개인) 또는 향후 법인 수익에 대한 예상 ☐ 아주 좋아질 것임 ☐ 좋아질 것임 ☐ 지금과 비슷할 것임 ☐ 나빠질 것임 ☐ 매우 나빠질 것임
투자위험 감수능력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투자목적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 채권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연령(개인)	☐ 30세 이하 ☐ 31세~40세 ☐ 41세~50세 ☐ 51세~65세 ☐ 65세 초과
법인업력 (설립일기준)	☐ 1년 미만 ☐ 1년~4년 ☐ 5년~9년 ☐ 10년~14년 ☐ 15년이상

☐ 전문투자자용 정보확인 (투자자 유형 조사 생략시)

☐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재산상황 및 투자목적 등에 대한 정보'는 연1회 이상 변동사항을 조사합니다.

☐ 자산배분유형 (투자일임)

자산배분 유형	공격투자형 (초고위험)	적극투자형 (고위험)	위험중립형 (중위험)	안정추구형 (저위험)	안정형 (초저위험)
	국내외 주식 및 메자닌		가입 불가		

☐ 세부자산배분유형 (투자일임)

☐ 집중형 리서치를 통해 엄선된 소수의 투자자산(ex. 메자닌, 비상장 주식, 부동산 등)에 집중투자(5개 종목 이하)하여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품
☐ 분산형

다양한 투자자산(ex. 인프라, 부동산, 메자닌, 채권 등) 편입을 통해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중위험, 중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품

□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본 투자일임계약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투자에 따른 손익 등 운용 결과가 본인에게 귀속됨을 설명 받았습니다.
3. 향후 **12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귀사가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4.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5. 본 투자일임계약은 투자일임재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됨으로 인해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 받았습니다.
6. 투자일임계약은 집합투자기구와 같이 분산투자규정이 없어 수익률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클 수 있음에 대하여 설명 받았습니다.
7.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받았습니다.
8. 본인은 투자일임계약의 내용 및 위험, 구조와 성격,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받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개인)

대리인 위임장

대 리 인	성명		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직업		국적	
	위임 내용	☐ 고객등록신청서 ☐ 투자일임계약서 ☐ 계약서류우편수령신청서 ☐ 투자자정보확인서 ☐ 합의서 ☐ CMS출금이체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필수 동의서 ☐ 설명서교부 및 계약내용설명확인서 ☐ 기타 ()				

본인은 대리인에게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제반 절차의 수행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서 명 / 인)
 (법인명) (법 인 인 감)

(법인)

사용인감계	
법인명	사용인감

사용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 인 의 인 감)

포인
이
포인

이
인
이

이
인
이

이
인
이

□ 투자자정보 확인

투자예정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4년 미만 ☐ 4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
투자경험	☐ 1년~2년 미만 ☐ 2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 ☐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 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전환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등 ☐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 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 복수의 금융투자상품의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위험등급의 금융투자상품 체크
투자지식	☐ 매우낮음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 낮은수준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 높은수준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 매우높음 :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재산상황	(개인) 연소득 현황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5천만원 미만 ☐ 5천만원~7천만원 미만 ☐ 7천만원~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개인) 총 자산규모(순자산) ☐ 5억 미만 ☐ 10억 미만 ☐ 20억 이하 ☐ 30억 이하 ☐ 30억 초과
	(개인) 총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 10% 이하 ☐ 2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40% 초과 (법인) 자기자본(자산-부채) 규모 ☐ 10억이하 ☐ 10억~50억 이하 ☐ 50억~100억 이하 ☐ 100억~200억 이하 ☐ 200억 초과
	향후 자신의 경제상황(개인) 또는 향후 법인 수익에 대한 예상 ☐ 아주 좋아질 것임 ☐ 좋아질 것임 ☐ 지금과 비슷할 것임 ☐ 나빠질 것임 ☐ 매우 나빠질 것임
투자위험 감수능력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적정성 보고서

■ 판매회사 및 직원 : 자산운용 직위 성명 서명/인

□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동 보고서는 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가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에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시 유의사항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가입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객정보 확인결과

○ [별표 제1호]을 준용하여 점검

□ 적정성 판단 결과 및 이유

종합	☐ 적정 ☐ 부적정
이유	점검 결과 ()점 이고 해당 고객의 유형은 ()이므로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년 월 일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계약절차의 적정성 확인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에 의거 투자일임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투자자로서 만65세 이상 개인 고객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계약절차 등의 적정성을 확인

계약자 성명	계약 체결일	계약 담당직원

- ☐ 고객의 신분을확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 ☐ 고객이 투자권유문서를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받았음을 확인
- ☐ 고객이 투자원금의 손실발생 가능성 및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는지 확인
- ☐ 고객의 투자자유형 및 세부유형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하였는지 확인
- ☐ 고객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확인 일자 및 시간	
확인자	
부서장	

※ 기타 특이사항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사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고령투자자"란 65세 이상 투자자를 말한다.
- ② "초고령투자자"란 80세 이상 투자자를 말한다.
- ③ "조력자"란 초고령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는 65세 미만의 가족, 후견인 등을 말한다.
- ④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2.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3.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4.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5.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6.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7.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8.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9.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10.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제 2 장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제3조(본사 전담부서)

준법감시담당부서는 고령투자자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한다.

제4조(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고위험등급 이상 상품 중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구조화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증권 및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제 3 장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제5조(고령투자자 판매절차 교육)

준법감시담당부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이 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불완전판매 점검)

준법감시담당부서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 대비 수수료 비중이 높은 계좌
2. 최근 대리인 등이 지정·변경된 계좌 중 투자활동 패턴에 변경이 있는 계좌

제7조(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은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를 받아 고령투자자로 하여금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조력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제8조(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

임직원은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4 장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제9조(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은 초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청약 철회 요청서

■ 고객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청약 철회 대상

- (투자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철회 대상 상품 :	☐ 투자성 상품 : (※ 회사별 세부사항 기재 가능)
1)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	년 월 일
2) 계약 체결일 : (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년 월 일

■ 주의 사항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고객은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년 월 일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 고객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	
계약 체결일 :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

증빙자료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참고자료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안내 사항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성명 :	년 월 일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서명/인)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 통지 대상 고객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 회사의 통지 결과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회사의 판단 결과 :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거절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거절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설명 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 안내 사항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하이즈에셋자산운용

적합성 판단 기준

■ 투자성향 점수화(Scoring) 방식

-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
-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
- "투자경험 등 일반적인 투자자 정보"는 유효기간동안 동일한 점수를 적용하고, "재산상황 및 투자목적 등에 대한 정보"는 매분기마다 조사하여 변경 사항을 재산운용에 반영

■ 고객 유형 분류

- 80점 초과 : 공격투자형
- 60점 초과~80점 이하 : 적극투자형
- 40점 초과~60점 이하 : 위험중립형
- 20점 초과~40점 이하 : 안정추구형
- 20점 이하 : 안정형

■ 문항별 배점

<개인>

구분	1	2	3	4	5	비고
투자예정기간	6	7	8	9	10	1년이상(집중형, 분산형)
투자경험	2	4	6	8	10	투자기간 고려하여 배점
투자지식	0	4	10	-	-	
금융자산비중	10	8	6	5	4	
위험감수	가입불가	3	5	10	-	투자원금 보존 희망시 가입불가
투자목적	10	8	6	4	-	
연령	2	8	10	8	2	
연소득현황	2	4	6	8	10	
향후 경제상황	10	8	6	4	2	
총자산 규모	2	4	6	8	10	

<법인>

구분	1	2	3	4	5	비고
투자예정기간	6	7	8	9	10	1년이상(집중형, 분산형)
투자경험	2	4	6	8	10	투자기간 고려하여 배점
투자지식	0	4	10	-	-	
금융자산비중	10	8	6	5	4	
위험감수	가입불가	3	5	10	-	투자원금 보존 희망시 가입불가
투자목적	10	8	6	4	-	
업력(설립일기준)	2	8	10	8	2	
당기순이익규모	2	4	6	8	10	
향후 수익예상	10	8	6	4	2	
자기자본 규모	2	4	6	8	10	

■ 적합성 판단 (100점 만점중 60점이하는 투자 '부적합')

점수별 구분	적합성 판단
☐ 80점 초과 : 공격투자형 ☐ 60점 초과 : 적극투자형	적합
☐ 60점 이하 : 위험중립형 ☐ 40점 이상 : 안정추구형 ☐ 20점 이상 : 안정형	부적합

※ 위 투자자유형에도 불구하고, 투자예정기간이 주식일임은 1년이상, ELS일임은 3년이상이어야 투자일임 계약 체결 가능

■ 투자자유형과 세부자산배분유형

세부자산 유형	공격투자형 (초고위험)	적극투자형 (고위험)	위험중립형 (중위험)	안정추구형 (저위험)	안정형 (초저위험)
집중형	가입가능	가입불가	가입불가	가입불가	가입불가
분산형	가입가능	가입가능	가입불가	가입불가	가입불가

적합성 판단 기준(파생결합증권 등)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구분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개인	만 65세 이상	- 파생상품 등 권유 불가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 등
	만 65세 미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 등	
법인 및 개인사업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상장 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위험도 분류

- 주의 :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 경고 :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 위험 : 주의와 경고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 기준

구분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채권		무등급, 투기등급 포함 (BB이하)		회사채 (BBB+~BBB-)	금융채 회사채(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 결합 증권	(ESL, ELW)	원금비보장형		원금 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ELW	ELW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 식			
장내 파생상품						
		선물·옵션				